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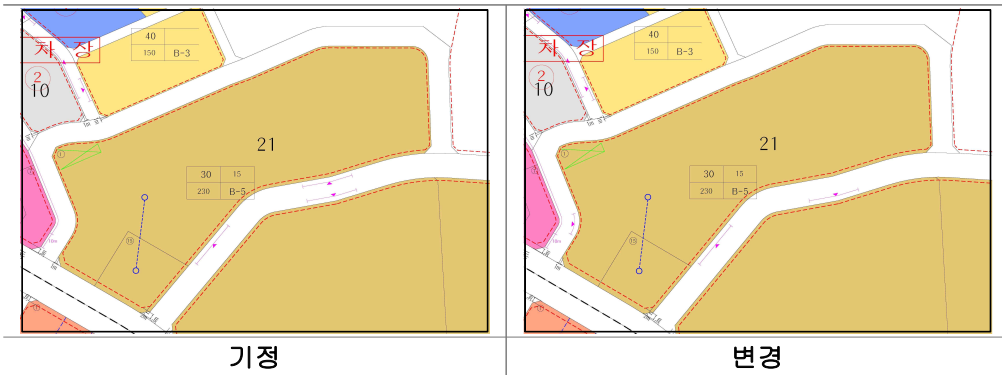
인천도시관리계획(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560-577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8. 6. 2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- I. 결정(변경)취지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
- II.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 - 2.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 (변경 없음)
 - 3.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
 - 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 없음)
 - 5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 - 6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
 - 교통처리계획 : 차량 진출입로 위치변경



- 7. 고시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: 구보계재 생략)